

2023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2023년도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포함) 소관의 예산안은 202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II.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1. 총괄

가.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안	증감	증감률 (%)
총계		837.9	718.3	△119.6	△14.3
일반회계	기술심사담당관	48.2	50.6	2.4	4.9
	품질시험소	789.7	667.7	△122.0	△15.4

나.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안	증감	증감률 (%)
계		1,924	2,156	232	12.1
일반회계	기술심사담당관	758	870	112	14.8
	품질시험소	1,166	1,286	120	10.3

2. 예산 편성 현황

가. 세 입 예 산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2023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총 계		837.9	718.3	△119.6	△14.3
기술심사담당관	계	48.2	50.6	2.4	5.0
	그외수입	9.6	7.2	△2.4	△25.0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9.6	7.2	△2.4	△25.0
	지난년도수입	0	3.4	3.4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0	3.4	3.4	-
	기타과태료	38.6	40.0	1.4	3.6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38.6	40.0	1.4	3.6
품질시험소	계	789.7	667.7	△122.0	△15.4
	주차요금수입	0	7.8	7.8	-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0	7.8	7.8	-
	기타사용료	6.5	0.6	△5.8	△90.8
	청사 사용료 수입	6.5	0.6	△5.8	△90.8
	증지수입	781.6	658.0	△123.6	△15.8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654.5	557.8	△96.7	△14.8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58.5	32.4	△26.1	△44.6
	각종계량기 관련 수수료	68.6	67.8	△0.8	△1.2
	그외수입	1.6	1.3	△0.3	△18.8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수입 등	1.6	1.3	△0.3	△18.8	

나. 세 출 예 산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	
총 계		1,924	2,157	233	12.1	
기술심사담당관	계	758	870	112	14.8	
	소 계	632	744	112	17.7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33	396	△37	△8.5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33	396	△37	△8.5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198	198	0	0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49	46	△3	△6.1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5	15	0	0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	90	90	0	0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44	47	3	6.8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0	150	150	-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0	150	150	-	
	기본경비	소 계	126	126	0	0
	기본경비	126	126	0	0	
	품질시험소	계	1,166	1,286	120	10.3
		소 계	785	899	114	14.5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785	899	114	14.5	
건설자재 품질시험		332	289	△43	△12.9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290	101	△189	△65.2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163	509	346	212.3	
기본경비		소 계	381	388	7	1.8
기본경비	381	388	7	1.8		

III. 분야별 세부내용

가. 세입예산안

1) 일반회계

- 기술심사담당관 소관(품질시험소 포함) 세입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임.

【 기술심사담당관 】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대비 4.9%인 2백4십만원 증가한 5천6십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그외수입
 -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7백2십만원
- 지난년도수입
 - 지난년도 수입 3백4십만원
- 기타과태료
 - 건설기술용역업(감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3천9백9십만원

【 품질시험소 】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대비 15.4%인 1억2천2백만원이 감소한 6억6천7백7십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주차요금수입
 -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7백8십만원
- 기타사용료
 - 청사 사용료 수입 6십만원
- 증지수입
 -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5억5천7백8십만원
 -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3천2백4십만원
 - 각종계량기 검정 관련 수수료 6천7백8십만원
- 그 외수입
 -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수입 등 1백3십만원

나. 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 기술심사담당관 】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대비 14.8%인 1억1천2백만원 증가한 8억7천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22년도 대비 8.5%인 3천7백만원 감소한 3억9천6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3억9천6백만원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관련 예산은 2022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억9천8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4천6백만원
 -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천5백만원
 -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9천만원
 -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4천7백만원
-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관련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1억5천만원 편성함.
 -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1억5천만원
- 기본경비는 2022년도와 동일한 1억2천6백만원임.

【 품질시험소 】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대비 10.3%인 1억2천만원 증가한 12억8천6백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은 2022년도 대비 14.5%인 1억1천4백만원 증가한 8억9천9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자재 품질시험 2억8천9백만원
 -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1억1백만원
 -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5억9백만원
- 기본경비는 2022년도 대비 1.8%인 7백만원 증가한 3억8천8백만원임.

IV. 검토의견

1. 개요

1) 총괄

가) 세입 : 전년대비 14.3% 감소한 7억 1,831만원

나) 세출 : 전년대비 12.1% 증가한 21억 5,653만원

2) 일반회계

【 기술심사담당관 】

가) 세입 : 전년대비 4.9% 증가한 5,063만원

나) 세출 : 전년대비 14.8% 증가한 8억 7,026만원

【 품질시험소 】

가) 세입 : 전년대비 15.4% 감소한 6억 6,767만원

나) 세출 : 전년대비 10.3% 증가한 12억 8,627만원

- 2023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의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는 상기와 같으며,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 소관의 세출예산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전략목표로 정책사업 2건, 단위사업 4건, 세부사업 9건으로 편성하였음.
- 정책사업들의 편성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등 6개 사업비(계속5) 7억 4,396만원을 편성하였고,

-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3개 사업비(계속3) 8억 9,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음.

2. 분야별 상세현황

가. 세입 예산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
총 계		837.9	718.3	△119.6	△14.3
기술심사담당관	계	48.2	50.6	2.4	5.0
	그외수입	9.6	7.2	△2.4	△25.0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9.6	7.2	△2.4	△25.0
	지난년도수입	0	3.4	3.4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0	3.4	3.4	-
	기타과태료	38.6	40.0	1.4	3.6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38.6	40.0	1.4	3.6
품질시험소	계	789.7	667.7	△122.0	△15.4
	주차요금수입	0	7.8	7.8	-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0	7.8	7.8	-
	기타사용료	6.5	0.6	△5.8	△90.8
	청사 사용료 수입	6.5	0.6	△5.8	△90.8
	증지수입	781.6	658.0	△123.6	△15.8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654.5	557.8	△96.7	△14.8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58.5	32.4	△26.1	△44.6
	각종계량기 관련 수수료	68.6	67.8	△0.8	△1.2
	그외수입	1.6	1.3	△0.3	△18.8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수입 등	1.6	1.3	△0.3	△18.8	

- 2023년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1,958만원(14.3%) 감소한 7억 1,831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건설기술용역업(감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건설공사 품질 시험수수료, 각종계량기 관련 수수료 등임.

(1) 『기술심사담당관』

1)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 건설기술심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5조¹⁾에 의거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 금회 전년 대비 240만원(25.0%)이 감소한 7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수수료 부과대상기관의 건설기술심의 의뢰건수를 고려해 최근 3년간의 평균 심의 요청 횟수인 9건에 부과수수료 80만원을 곱하여 산정([표] 참조)하였음.
- 기술심사담당관은 심사대상에 대해 의뢰 요청 건 외로 심의 대상에 누락되는 건이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건설기술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임.

[표]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산출근거

□ 2023 세입추계	7,200천원				
○ 최근 3년간(2019~2021) 평균 징수액은 7,676천원이며, 2023년 수수료 부과대상 설계·진단용역은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주택도시공사 등 약9건 예상 = 800천원 × 9회 = 7,200천원					
[표] 수수료 부과대상 건설기술심의 연도별 개최 횟수					
수수료	2018	2019	2020	2021	2022(전망)
800천원	13건	12건	7건	10건	10건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5조(심의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위원회에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심의 내용 및 실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표] 최근 5년간 주요기관별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부과 및 징수 실적

※ 2022. 10월 현재, (단위:천원)

연번	요청기관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합 계	부과	9,000	9,600	5,600	7,200	4,000	
		징수	8,200	9,600	5,600	7,200	4,000	
1	서울교통공사 (舊서울메트로, 舊 서울도시철도공사 포함)	부과	5,600	4,800	4,000	6,400	3,200	
		징수	4,800	4,800	4,000	6,400	3,200	
2	서울주택도시공사	부과	800	800	800	-	-	
		징수	800	800	800	-	-	
3	농수산식품공사	부과	800	-	-	-	-	
		징수	800	-	-	-	-	
4	강남구청	부과	800	1,600	-	-	-	
		징수	800	1,600	-	-	-	
5	중구청	부과	-	800	-	-	-	
		징수	-	800	-	-	-	
6	동작구청	부과	-	800	-	-	-	
		징수	-	800	-	-	-	
7	서초구청	부과	-	-	800	-	-	
		징수	-	-	800	-	-	
8	양천구청	부과	-	-	-	800	-	
		징수	-	-	-	800	-	
9	강서구청	부과	-	-	-	-	800	
		징수	-	-	-	-	800	
10	서울문화재단	부과	-	800	-	-	-	
		징수	-	800	-	-	-	

2)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세입 예산은 전액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감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로 금회 전년대비 140만원 (3.6%) 증가한 4천 만원을 편성하였음.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감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3항 및 제91조제3항제5호2)에 의거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리전문회사가 대표자, 감리원 등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세수추계 방법은 최근 3년간 과태료 징수 결산액 대한 평균액으로 산출([표] 참조)하였는데, 연도별 과태료 적발 건수 편차가 심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것으로 파악됨.

[표]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세수추계 산출근거

□ 2023 세입추계	————— 3,999만원
○ 건설기술용역업(감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	
	(4,007만원 + 4,066만원 + 3,925만원) ÷ 3 = 3,999만원
- 산출내역: '20~'22년도 평균 징수액(전망)	
※ 징수액의 연도별 편차가 심해 최근3년간 평균 적용 산출	
※ '21년 결산액의 경우 일제점검 실시 등 특수상황고려하여 40%만 적용	
○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미제출 과태료 : 없음	
※ '15년 이후 부과 내역이 없으므로 '23년도 없을 것으로 전망	

[표] 최근 4년간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예산편성에 따른 결산내역

※ 2022. 10월 현재, (단위 : 천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35,000	20,325	35,200	40,065	38,702	101,645	38,613	7,180	39,253	39,990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부터 기술인력, 대표자, 소재지 변경 등 법에 규정된 제반사항 신고 지연으로 인한 법령위반사항을 통보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추계가 부정확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 최근 3년간 결산 추이를 보면([표] 참조) 세수추계의 부정확도가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

[표] 건설기술용역업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예산액 및 징수결정액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예산액 대비 결산 비율
2019년	25,000	20,325	20,325	81.3%
2020년	25,000	40,065	40,065	160.3%
2021년	28,702	102,485	101,645	357.1%

- 참고로,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 과태료’³⁾ 또한 포함되어 있으나, 2015년 이후 부과 건수가 1건도 발생하고 있지 않아 금회에는 세수추계에 반영하지 않았음.

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 과태료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7항 및 같은 법 제91조 제2항제3호에 의거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3)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세입 예산은 '18년과 '21년 부과된 '건설기술용역업(감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으로 금회 3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표]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수입 산출근거

□ 2023 세입추계	345만원
○ 과태료 체납분 산출내역	: (2,499천원+476천원+472천원)=3,447천원
• '18. 4월 부과	: 본세 1,500천원(375천원×4건)+가산금 45천원(본세×3%)+증가산금 954천원(본세×1.2%/월)=2,499천원
• '21. 2월 부과	: 본세 375천원+가산금 11천원(본세×3%)+증가산금 90천원(본세×1.2%/월)=476천원
• '21. 3월 부과	: 본세 375천원+가산금 11천원(본세×3%)+증가산금 86천원(본세×1.2%/월)=472천원
※ '19~'20년도	는 체납분이 없음

- 동 세입추계는 지난해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금회 편성되었는데, 이는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세수추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금회 장기간 체납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한 세입전망을 계상하였으므로, 체납분 징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2) 『품질시험소』

1)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은 지난해에는 기타사용료로 편성하였으나 주차요금 수입 분리부과 규정([표] 참조)에 따라 금회 별도의 세목으로 편성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198만원 (34.1%)이 증가한 777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20.7. 개정)

현 행				개 정			
과목 구분			현행 과목구분 설정	과목 구분			개편 과목구분 설정
관	항	세목		관	항	세목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2 사용료수입				212 사용료수입			
	08	기타 사용료	1.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2. 기타특별회계의 온천금탕, 증기사용, 주차장사용 등 사용료 수입		08	주차 요금 수입	1.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수입
					09	기타 사용료	1. 타 과목에 속하지 않은 점 용료 및 사용료 수입

-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은 「주차장법」 제19조제12항4)에 따라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세수추계는 최근3년('20년~'22년) 평균수입액(정기주차, 일일주차 별도 산정)으로 산출하였음.

4) 「주차장법」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⑫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표]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산출근거

□ 2023 세입추계	777만원
○ 주차요금수입 2023년 전망액	: 7,560천원 + 216천원 = 7,776천원
• 산출내역	
- 정기주차	: 630,000원×12월 = 7,560,000원
- 일일주차	: 18,000원×12월 = 216,000원
※ '20년~'22년 5월(현재) 평균금액으로 산정	

-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은 전년대비 19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세입 전망을 최근 3년간 평균 수입액으로 산출함에 따른 것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수입액에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차량 출퇴근 장려정책에 따른 주차장 수입 증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전인 '19년도 예산액 대비 결산액에서 보는 바([표] 참조)와 같이 차년도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으로 주차장 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회 세수를 추계함에 있어 특수한 상황으로 증가한 금년 결산액을 제외하는 등의 적극적인 세수추계를 통해 세수추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있음.

[표] 최근 4년간 청사 부설주차장 예산편성에 따른 결산내역

※ 2022. 10월 현재, (단위 : 천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13,002	3,629	3,685	4,525	3,913	8,908	5,795	4,102	9,422	7,776

2) 청사 사용료 수입

- 청사 사용료 수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2조⁵⁾에 의거 품질시험소 본관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시설⁶⁾의 청사사용료 수입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세수추계는 공시지가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 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68만원을 편성([표] 참조)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표] 2023년 품질시험소 청사 사용료 수입 산출근거

□ 2023 세입추계	68만원
○ 공유재산 사용료 2023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23년 전망액 : 675천원	
• 산출내역	
- 본관 사용료(태양열 발전시설) : 674,900원	
[공시지가(2,932,000원)×건축부지면적(1,278.8㎡)×옥상지수(0.018)]×요율(10/1000)	
= 674,900원	

3)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

-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⁷⁾ 및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6) 서울시와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과의 협약(허가기간 '14. 8.18~'24.8.17)에 의거 품질시험소 옥상을 10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 임대해 주고 있으며,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이 사용료를 매년 지불하고 있음에 따라 세입 전망액으로 편성.(2014.9. 준공. 용량 36kw)

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

조례」 제6조 및 제13조⁸⁾에 근거한 품질시험 확인 및 건설공사 발주자의 시험의뢰에 따른 처리수수료로,

- 금회 전년대비 9,671만원(14.8%)이 감소한 5억 5,78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품질시험수수료의 2022년 결산전망액(5억 3380만원)에 물가상승률(4.5%)을 적용한 것으로 '22년 건설현장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점검대상 공사현장이 감소추세('20년 223건, '21년 200건, '22년 196건(전망))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추계의 정합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 됨.

[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연도별 예산편성액 및 결산액

(단위: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계	650,737	597,470	641,477	643,829	642,985	566,027	654,527	197,462	533,802	557,822
건설공사 품질점검	273,099	248,137	257,797	249,350	250,818	215,157	253,686	72,069	220,319	230,233
건설자재 품질시험	377,638	349,333	383,680	394,479	392,167	350,870	400,841	125,393	313,483	327,589

해야 한다.

- 8)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품질검사의 종류와 그 처리기간에 대한 고시) ① 품질검사의 종류와 그 처리기간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시보에 고시하는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종류 및 수수료 등"의 기준에 따른다.

제13조(품질검사 등 수수료) ① 시험소장에게 품질검사,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의뢰할 경우 해당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13호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3항¹⁰⁾과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¹¹⁾ 그리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0]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표] 참조)에 근거하여 택시미터 검정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표]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부과 기준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1) 택시미터 정치검정 수수료	1대	2,400원
2)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수료 : 기본검정료와 거리검정료의 합계 금액으로 징수한다.		
- 기본검정료 (접수, 차량유도, 신청서 확인 및 안내, 봉인 등)	1대	2,800원
- 거리검정료 (주행 검정거리가 매 1km초과 시 마다) ※ 단, 1km미만은 1km초과 거리검정료를 징수한다.	1대	600원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0]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 금회 전년 대비 2,608만원 (44.6%)이 감소한 3,23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동 사업예산은 지난해까지 당초 최근 3년간 평균 검정실적으로 세입을 추계하였으나,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의 장기화 추세로 인해 검정실적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2년도 세입 전망액(4,049만원)에 올해 검사대수 감소율 20%([표] 참조)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임.

9)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중략)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13. 제47조에 따라 택시미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1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 ③ 전기식 택시미터에 대해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전기식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1)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검정 수수료) 검정기관은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검정종류별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리검정 중 정치검사 또는 주행검사를 따로 실시할 때에는 정치검사 수수료와 주행검사 수수료를 구분하여 받을 수 있다.

[표]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산출근거

□ 2023년도 세입추계		3,239만원		
○ 산출내역				
- 주행검사 : (7,978대 = 9,972대('22년) × 0.8) × 4,000원 = 31,912천원				
- 정치검사 : (201대 = 251대('22년) × 0.8) × 2,400원 = 482천원				
⇒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 장기화로 2022년도 전망액에 감소율 반영하여 세입추계				
⇒ 감소율 산출근거 : 2021년도 실적 대비 2022년도 전망실적				
구 분	2021년 실적	2022년 전망	감소율(%)	비 고
검사대수	12,824	10,223	20%	0.8 = 1 - 감소율

- 그러나, 서울시가 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앱미터기 도입을 올해 완료하겠다고 발표('GPS 기반 앱미터기' 본격 도입...22년 내 서울 택시 전체 확대한다)¹²⁾하였고, 이에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수입의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 금회 세수를 추계함에 있어 정책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세수추계를 했어야 하나 '21년 실적대비 금년도 전망실적으로 감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은 세수체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겠음.

12) 서울시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_보도자료(2022. 6. 24.)

서울시, IT기술로 정확도 높은 'GPS 택시 앱미터기' 본격 도입...부당 요금 민원 해소, 신뢰도 ↑

- 위치, 거리 정확도 높은 'GPS 기반 앱미터기' 본격 도입...22년 내 서울 택시 전체 확대한다
- 바퀴 회전수 계산했던 '기계식 미터기'→IT 기술·지도 위치 적용한 '앱미터기'로...택시 산업 변화 물결
- 미터기 오작동 등 승객 불편 민원 획기적 해소 전망, 시계외 수기입력 등 어려움도 줄어

(이 하 생 략)

5)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

-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는 가스미터, LPG미터, 저울 검정 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으로 금회 전년대비 88만원(1.2%)이 감소한 6,775만원을 편성하였음.
- 가스미터 수수료는 검정 유효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여 5년 전('18년) 검정수량(302,442대)에 최근 10년간 평균 세대수 증가율(1.73%)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LPG미터, 저울 수량은 증감추세가 없어 '22년 결산 전망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표]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 산출근거

□ 2023 세입추계 ————— 6,775만원						
○ 2023년 추계액 : (67,684천원+46천원+20천원)=67,750천원						
○ 산출내역						
- 가스미터 : (302,442대×1.73%=307,653대)×220원=67,684천원						
- LPG미터 : 2대×23,180원=46천원						
- 저울 : 6대×3,390원=20천원						
⇒ 최근 5년 검정실적 및 전망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망대수)
검정대수	290,280	302,422	331,061	274,062	295,806	355,908

5) 수도미터검사 수수료 수입 등

- 수도미터검사 수수료는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3조¹³⁾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금회 전년대비 62만원(20.2%)이 감소한 126만원을 편성하였음.

13)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487호, 2019. 12. 12 시행)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제3조(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 및 비용)

- 수도미터검사는 요금분쟁에 따른 민원검사로 전년 같은 기간 539대와 비교하여 올해 160대로 379대(70.3%)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개정(2021. 5. 20.)¹⁴⁾으로 민원검사 결과 계량기가 정상일 경우 수수료를 시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함에 따른 의뢰 감소임.
- 세수추계는 수도미터검사의 감소추세를 고려하여 올해 5월까지의 검사 대수를 기준으로 추계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표] 수도미터 검사수수료 산출근거

□ 2023년도 세입추계 ————— 1,260천원
○ 수도미터 : 384대 × 3,282원/대 = 1,260천원
※ 올해 5월 기준 160대 ÷ 5월 × 12월 = 384대

- 상기 ‘기타 사용료 수입’,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 ‘수도미터검사 수수료 수입 등’ 사업을 살펴보면,
- 예산편성 시 추계기준 설정에 있어 일부만 최근 급등한 물가 상승률¹⁵⁾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요인을 반영하고 있는데,

14)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수도계량기의 시험)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한국경제 주요 지표 전망(% , 5.26.기준)>

	’21년	’22년	’23년
경제성장률	4.0	2.7	2.4
민간소비	3.6	3.7	2.7
설비투자	8.3	△1.5	2.1
소비자물가	2.5	4.5	2.9

- 이는 세입을 추계함에 있어 지역경제상황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자체수입)¹⁶⁾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 세입 전망을 각 담당자의 판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반영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수립하여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1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稅外收入)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나. 세출 예산안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	
총 계		1,924	2,157	233	12.1	
기술심사담당관	계	758	870	112	14.8	
	소 계	632	744	112	17.7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33	396	△37	△8.5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33	396	△37	△8.5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198	198	0	0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49	46	△3	△6.1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5	15	0	0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	90	90	0	0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44	47	3	6.2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0	150	150	-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0	150	150	-	
	기본경비	소 계	126	126	0	0
		기본경비	126	126	0	0
	품질시험소	계	1,166	1,286	120	10.3
		소 계	785	899	114	14.5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785	899	114	14.5	
건설자재 품질시험		332	289	△43	△12.9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290	101	△189	△65.2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163	509	346	212.3	
기본경비		소 계	381	388	7	1.8
		기본경비	381	388	7	1.8

(1) 『기술심사담당관』

1) 건설 기술심의회 운영 (사업별설명서 P.17)

- 동 사업은 건설공사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안전성, 적정성, 설계경제성(VE) 등을 심의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전년대비 3,746만원(8.5%)이 감소한 3억 9,571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2021년도 및 2022년도 건설 기술심의회 세부예산(안)

(단위:천원)

사 업 명		2022년 (A)	2023예산(안) (B)	증감(B-A)	(B-A)*100/A
					(%)
건설 기술심의회 운영		433,183	395,716	△37,467	△9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417	7,694	277	4
	사무관리비	355,584	319,780	△35,804	△10
	공공운영비	2,000	2,000	0	0
	국내여비	1,440	0	△1,440	△100
	국외업무여비	10,000	20,000	10,000	10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8,370	8,370	0	0
	특정업무경비	25,872	25,872	0	0
	행사실비지원금	22,500	12,000	△10,500	△47

- 서울시는 주요 감액 사유로, 감소추세에 있는 설계경제성(VE)검토와 정밀안전진단심의의 개최 횟수 감소([표] 참조) 그리고 신기술 일괄 심의로 인해 최근 실적이 저조한 건설

신기술활용심의의 심의횟수 감소('20년 4건, '21년 0건, '22년 1건) 등을 반영하였다는 입장인데,

[표] 최근 5년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년도	계	용역발주 심의	설계 심의	정밀안전 진단심의	사업수행 능력평가 기준심의	입찰방 법심의	입찰안내 서심의	설계심의 사후평가	설계경쟁성 (VE)검토	공사기간 적정성심의	건설사업관 리계획심의	설계적격 심의
2022 (9.30. 기준)	192	74	35	22	-	2	3	1	26	8	13	8
2021	280	74	63	88	1	1	2	-	31	4	10	6
2020	273	76	64	43	1	4	2	8	58	8	4	5
2019	256	111	62	60	4	5	3	8	-	3	-	-
2018	196	79	57	43	-	5	1	11	-	-	-	-

- 다만, 최근 5년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주요 개최 내역을 살펴보면, 정밀안전진단심의 소위원회 심의는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주기적¹⁷⁾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의이며,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는 ‘18. 12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신설된 심의¹⁸⁾로 심의대상을 당시 새로 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대상의 발주부터 적용하기로 규정¹⁹⁾함에 따라, ‘20년부터 심의대상이 발생하였는데 대상이 증가하는 추세임.
- 또한 공사기간 적정성심의도 ‘19. 4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신설된 심의²⁰⁾로 신설 당시 “대형공사, 기술형입찰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1.9월 대상 조항 개정에 따라 “100억이상 공사”로 심의대상이 확대되어 심의안전의 증가가 예상됨.
- 이처럼 심의 주기 도래 및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심의 종류가 다양화하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타당성 그리고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한 심의제도가 지속하여 증가될 것을 고려한다면,

18)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③ 발주청은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8. 12. 31.]

19) 「건설기술진흥법」 부칙 <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제5조(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계용역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2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업무 과다로 인한 위원회의 심사 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다분하다 판단되므로, 기술심사담당관의 상급기관으로의 조직개편과 각종위원회 업무 분리분담 및 인력충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아울러, '23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특근매식비 및 국내여비를 전액 삭감하여 미편성 하였는데, 이는 기동점검 및 신기술점검 등의 출장비 및 식비로, 기술심사담당관의 업무 강도 및 횡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원 사기에 직결되는 예산의 감액에는 보다 신중함이 요구된다 하겠음.

2)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사업별설명서 P.23)

- 동 사업은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예산은 전년대비 302만원(6%) 감소한 4,581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변동사유는 동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장교육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²¹⁾하고 있는바, 원고료 단가 기준을 온라인교육의 특성에 맞춰 302만원 감액한 것에 따른 것임.

21) 기술심사담당관-222(2021. 1. 6.)

- 기술사학원과의 협약을 통한 온라인교육 실시.

[표] 기술직공무원 온라인 직장교육 직원 만족도 조사내역

구 분	2021년			2022년 (상반기)			비 고
	만족	보통	이하	만족	보통	이하	
자기발전 및 실무수행에 도움	95	5	-	95	5	-	
기술사 자격시험 대비 도움	96	4	-	89	11	-	
강사 수준 및 강의 기법 만족도	94	6	-	84	13	3	

○ 동 사업의 최근 2년간 직원 만족도 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직원들이 만족([표]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2년간 교육이수율 또한 80%([표] 참조)에 이르고 있으므로,

- 추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 확대를 고려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을 병행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최근 2년간 기술직공무원 온라인 직장교육 현황

대상기관	교육 대상자수	교육 이수자수	미이수 사유별 인원		비 고	
			인 원	사 유		
총 계	275	220	55			
2021년	소 계	185	156	29	• 소관업무 과다	교육수강률 80%
	본 청	55	45	10		
	사업소	56	42	14		
	자치구	74	69	5		
2022년 (상반기)	소 계	90	64	26	• 소관업무 과다	
	본 청	20	16	4		
	사업소	18	13	5		
	자치구	52	35	17		

3)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사업별설명서 P.27)

- 동 사업은 서울시의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도시기반시설 건설 기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건설기술 발전과 시민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전년과 동일한 1,517만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시 건설상 시상의 경우 서울시 건설분야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다양한 계층에 홍보를 강화하여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건설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4)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사업별설명서 P.31)

- 동 사업은 기술직 공무원의 자체설계 능력 향상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전년과 동일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기술용역 발주부서 자체시행 기준’²²⁾에 따라 전문 기술을 요하지 않는 소규모 단순설계 등 7개 분야의 47개 공종에 대한 자체설계도면(CAD) 작성비를 지원²³⁾하는 것임.

22)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호, (‘11. 7. 8.)

23) 자체설계도면(CAD) 작성비 지원 분야: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상수도, 건축, 기계·설비, 조경 분야

[표]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최근 4년간 예산 집행 및 불용 내역

※ 2022. 9월 30기준, (단위 : 천원)

연 도	발주부서 요청금액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현액	집행금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계	326,091	370,000	-	370,000	258,155	57,589	-	3년간 (‘19~21) 평균불용률 29.3%
2022	86,833	90,000	-	90,000	60,225	-	-	
2021	89,985	90,000	-	90,000	61,331	4,188	4.5	
2020	88,163	95,000	-	95,000	81,995	13,005	13.7	
2019	61,110	95,000	-	95,000	54,604	40,396	42.5	

- 자체도면 작성에 따른 예산절감과 직원들의 업무 능력향상에
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효용성은
입증되었으나, 사업의 요청건수는 감소하는 추세(‘21년:15건→
‘22년:10건)이므로,
 - 자체설계 대상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활성화 기여 우수자
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추진하여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표] 2022년도 설계도면 작성 지원사업 내역

연번	기관(부서)	자체설계 대상사업	배정금액	집행금액
	계		86,833	67,250
1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교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개선 공사 외 4건 (사업지연으로 12월 집행 예정)	10,750	0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목동빙상장 노후 화장실 개선공사 외 1건	9,675	9,263
3	중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송현동 열린 녹지광장 조성공사	7,395	7,025
4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2022년 경의선숲길공원 정비사업	7,080	6,700
5	서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월드컵공원 노후 조경시설물 정비사업 외 2건 (11월말 사업완료 후 집행예정)	3,514	0
6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선유도공원 산책로 주변 재정비공사 외 3건	11,190	9,964
7	동대문구 (치수과)	풍물시장 주변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 외 5건	8,600	7,000
8	종량구 (치수과)	면목로30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외 7건	16,680	15,620
9	서초구 (공원녹지과)	서초, 양재권역 공원수목식재사업 외 2건	9,030	8,759
10	강동구 (치수과)	올림픽로 556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2,919	2,919

5)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P.35)

- 동 사업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적정성 여부의 신속한 확인을 위한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회 전년 대비 274만원(6.2%) 증가한 4,725만원을 편성하였음.
- 금회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정보화용역사업의 단가 현실화에 따른 2022년 SW기술자 평균임금([표] 참조) 적용 및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른 제경비율(140%)²⁴⁾ 적용 그리고 물가 상승률(2.9%)을 반영한 것에 따른 것으로,

[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2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구 분	평균임금(일당)	
	2021년	2022년
IT PM	411,329	406,823
데이터아키텍트	437,063	414,770
응용SW 개발자	323,174	306,034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298,254	243,285
IT시스템 운용자	284,286	297,180

- '계약금액조정 검증 시스템' 적용 후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9월 30일 기준 최근 3년간 예산 절감액은 제비율 검증으로 67억 31백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증으로 3억 4백만원, 합계 69억 66백만원으로 사업추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 판단됨.

[표]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 : 건, 백만원, '22.9.30. 기준)

년 도	계		제비율 검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증	
	조치건수	금 액	조치건수	금 액	조치건수	금 액
합 계	6,224	6,966	5,725	6,731	496	304
'22년	1,351	1,094	1,247	1,012	104	82
'21년	2,495	2,284	2,287	2,214	208	140
'20년	2,378	3,588	2,191	3,505	184	82

※ 2022년 실적이 다른 년도에 비해서 적은 사유는 대부분의 설계변경이 10월~12월 사이에 진행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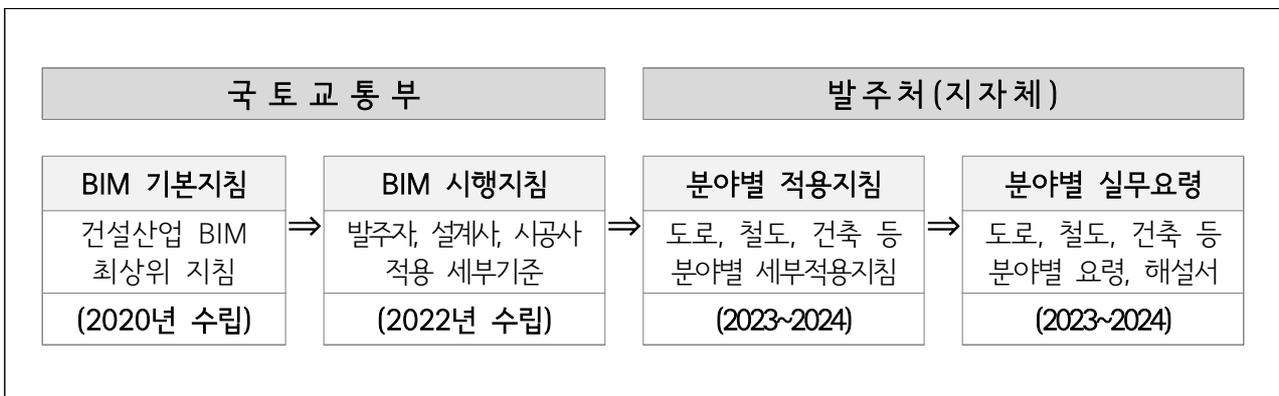
24)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2022.08.25.)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40~150%

6)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사업별설명서 P.38)

- 동 사업은 스마트건설의 핵심기술인 BIM²⁵⁾을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의 건설사업 전 주기에 도입하기 위해 설계 기준 및 운영 지침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금회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18. 10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한 후 '20. 12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을 통해 발주처(지자체)가 사업유형 및 특성에 맞는 'BIM 적용지침'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22. 7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을 수립함에 따라,
 - 서울시는 그에 따는 후속 조치로 금회 예산편성을 통한 '서울시 BIM 적용지침 수립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임.

[표] BIM 지침 수립단계(국토부 지침)



25) 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란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하여 건설정보와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고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 체계

- 서울시는 본 용역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면 BIM 설계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도로 및 철도, 건축 분야에 대하여 적용지침을 우선 마련하고, 전체적인 건설단계 및 타 시설 분야로의 확대는 정부정책 및 기술발전 여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방향성은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은 서울기술연구원에서 '21년 '스마트건설기술 도입방안' 연구와 22년 '서울시 BIM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 수립'연구를 마친 사업이므로, 해당 연구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 용역 과업을 설정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BIM 기본지침 및 시행지침의 원칙과 기준을 서울시 기준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현장 적용성이 높은 서울시 BIM 적용지침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2) 『품질시험소』

1)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업별설명서 P.45)

- 동 사업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품질시험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업무효율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전년대비 4,346만원(13%)이 감소한 2억 8,895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변동 사유를 살펴보면 '20. 12월 수도미터 검사장이 별 관에서 본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지난해 계측기 교정감사 대수가 80대에서 23대로 감소([표] 참조)하여 시험장비 교정수수료가 2,149만원 감소한 것과,

[표] '22년도 품질시험소 교정 대수 대비 '23년도 계획 대수 비교표

연번	용 도	장 비 명	교정 주기 (년)	규 격	'22년도	'23년도 계획
					수 량 (대)	수 량 (대)
1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1	CT-II	7	8
		정치검사기	3	CT-V		9
2	LPG 미터	기준비중부액계	3	0.500-0.650g/cm ³ 1.000-1.060g/cm ³	2	
		전기식 지시저울	1	100g~30kg	1	1
		기준유리제 온도계	1	0~50℃ -2~52℃	2	2
3	주유기	기준탱크	2	20L		2
				100L		1
4	저울	분 동	2	20kg	20	
		기준분동(1급)		1mg~10kg	2	
5	수도 미터	전자유량계	2	DMF2110	16	
				Promass	2	
		온도변환기	2	TFT35	14	
	압력계	2	S-20	14		
합 계					80	23

-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정책으로 야외마스크 필수 착용이 해제됨에 따라 현장점검 및 시험원의 마스크 구입비 936만원이 미편성 됨에 따른 것임.

- 다만, 서울시는 품질시험소 직원들을 대상으로한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워크숍비’ 4백만원 또한 감염병 재유행을 우려하여 전액 감액하였는데,
 - 이는 앞서 마스크 구입비를 전액 감액한 사유와 상충하는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같은 사업 내에서 서로 다른 산출 근거가 적용되어 일관성 없이 산출된 것이므로 차후 세심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워크숍비 등은 직원 사기에 직결되는 예산이므로 감액 시 보다 신중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 하겠음.

2)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사업별설명서 P.53)

- 동 사업은 노후된 시험장비를 교체하여 시험능률을 향상시켜 품질시험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전년 대비 1억 8,942만원(65.2%)이 감소한 1억 92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감소사유로 시험장비 확충 5개년 계획([표] 참조)에 따라 ‘22년 아스콘 코아채취기 등(1억 94백만원)의 장비가 구매 완료된 것과, 품질시험소 청사 전기 분전반의 노후 등으로 인한 정비가 완료된 것에 따른 것인데,

[표] 시험장비 확충 5개년 계획('23년~'27년)

추진 개요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3조, 「계량에 관한 법률」제25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사업기간 : 2023. 1. ~ 2027. 12.(5개년)

추진방향

- 장비의 성능개선, 시험항목 추가 및 시험량 증가 및 시험실 환경 개선 등으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장비 ⇒ **신규 구매**
-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된 시험장비 ⇒ **교체 구매**
 -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로 성능저하 및 고장의 우려가 있어 장비의 지속적 사용이 곤란한 장비
 -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장비라도 시험횟수가 많아 손상되거나 수리비용이 과다한 경우의 장비
 - 교정결과 오차범위가 커져 정밀도가 낮아진, 사용이 곤란한 장비
- 수리 및 교정검사 후 사용 가능한 장비 ⇒ **계속 사용**
 - 정밀도가 요구되지 않고 기능저하가 거의 없으며, 현대화가 불필요한 장비는 수리 및 교정검사를 실시하여 시험장비 계속 사용

추진 계획

- 총사업비 : 688백만원
- 사업규모 : 교체 등 53대
- 시험장비 확충 세부계획
- 사업규모(구매 수량):

구 분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수 량	53	13	11	10	9	10
금 액	688	72	225	181	130	80

- 2023년: 건조기 등 13대 : 72백만원
- 2024년: 힘강도시험기 등 12대 : 225백만원
- 2025년: 힐트레킹시험기 등 10대 : 181백만원
- 2026년: 만능재료시험기 등 9대 : 130백만원
- 2027년: 건조기 등 10대 : 80백만원

- 품질시험소의 전체 장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가 32%([표] 참조)에 이르고 있음에도, 매년 품질시험소의 신규 장비 구입 예산이 감소([표] 참조)하고 있다는 것은 소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는 바,

[표] '22년 품질시험소 내구연한 경과 시험장비 현황

구 분	보유장비 수	내구연한 경과 장비 수
주 장비	232대	83대
시험 기구	120대	30대
합 계	352대	113대(32%)

- 내구연한 경과 장비 중 수리 가능한 장비를 제외하고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는 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표] 최근 4년간 품질시험소 신규장비 구매 예산내역

(백만원)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4억 9,700만원	3억 8,500만원	1억 9,400만원	7,200만원 (계획)

3)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P. 58)

- 동 사업은 품질시험소 청사 청결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사 노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회 전년대비 3억 4,620만원(212%)이 증가한 5억 873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증가 사유는 '22.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²⁶⁾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함에 따른 품질시험소의 후속조치로,

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시행 2022. 1. 27.)

- 예산안의 세부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사무관리비 증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²⁷⁾에서 경영책임자 즉 시장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 하기 위한 안전·보건 위탁관리비 930만원과 같은 법 시행령²⁸⁾에서 사업장(품질시험소)의 위험성을 반기별로 평가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함에 따른 위험성 평가 비용 43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한 것이 주요인임.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2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표] 품질시험소 안전·보건 위탁관리 계획 세부내역

구분	안전관리	보건관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안전관리 업무 위탁 ▶ 사업기간 : '22.2.1 ~ 12.31(11개월) ▶ 위탁업체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 동부지회 ※ 안전관리 전문기관 ▶ 소요예산 : 3,527,150원 ▶ 운영현황 : 안전관리자 월 2회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보건관리 업무 위탁 ▶ 사업기간 : '22.2.1 ~ 12.31(11개월) ▶ 위탁업체 :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 지역본부 ※ 보건관리 전문기관 ▶ 소요예산 : 3,718,000원 ▶ 운영현황 : 보건관리자 등 월 1회 방문
위탁관리 선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안전관리 업무 위탁 ▶ 사업기간 : '23.1.1. ~ 12.31. ▶ 소요예산 : 4,296,000원 ·산출내역 : 358,000원 × 12개월 ▶ 위탁업체 : 전문기관 중 견적비교 선정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보건관리 업무 위탁 ▶ 사업기간 : '23.1.1. ~ 12.31. ▶ 소요예산 : 5,004,000원 ·산출내역 : 417,000원 × 12개월 ▶ 위탁업체 : 전문기관 중 견적비교 선정 예정
상세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안전관리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안전관리자) 등

- 공공운영비 신규편성액 1,500만원은 청사 및 시험실 위해요소 점검에 따라 도출([표] 참조)된 안전장비 구매비(1,000만원)와 밀폐공간 작업 등에 따른 유해 요소 정비비(500만원)에 해당하며,

[표] 품질시험소 위해요소 점검 시 도출 결과 및 정비비 산정 결과

구분	내용	비고
청사 및 시험실 위해요소 점검 시 도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가동중단 중인 리프트의 추락 방지 장치 설치 ▶ 현업근무자 안전 장비(밀폐공간 작업복 등) 구매 	
정비비 산정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락 방지 장치 설치 : 10,000천원 ▶ 밀폐공간 작업복 등 구매 : 5,000천원 	

- 시설비 편성액 3억 7,724만원은 청사의 노후 된 시험실과 샤워실, 화장실 등의 개선비(2억 32백만원)와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²⁹⁾하기 위해 편성한 화학 시험실 국소배기장치 설치공사비(1억 4천만원)등 에 해당함.
- 동 사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의무사항과 노후된 청사를 개선하여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됨.
- 다만, 동 사업들은 해당 법령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므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